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59
----------	------

2025. 10. 17.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9. 30. 광양시장
- 나. 회부 일자: 2025. 9. 30. 회부
- 다. 상정 일자: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2025. 10. 17.) 상정,
“원안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교육 및 문화 활동 참가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4조제4호, 제6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호)
-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위한 신설 및 정비
(안 제11조제3항)

3. 검토 의견

가. 주요 내용 검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기타 → 그 밖에 (안 제4제4호, 제6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호)
- 경감 → 감면 (안 제11조제4·5항)

○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1조제3항)

- (신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적용대상자
- (신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신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신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신설)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정비) 다자녀 세대 기준 완화: 1가구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 (정비) 학습·봉사 목적으로 시설 사용하는 경우 면제 명문화
- (정비)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감 규정 명확화

나. 검토 결과

- 이 개정 조례안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수강생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교육·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 상위 법령 및 조례안의 내용과 조문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6명)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경감”을 각각 “감면”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적용대상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14.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또는 수료자가 학습·봉사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5.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12조제1호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업무)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p>	<p>제4조(업무)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제6조(위원회) ①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5. <u>기타</u>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생략)</p>	<p>제6조(위원회)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② (생략)</p> <p>③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p> <p>2.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및 「<u>한부모가족지원법</u>」에 의한 <u>요보호 대상자</u></p>	<p>제11조(사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p> <p>2.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u>따른 수급자</u></p>

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자녀 세대 (1가구 3자녀 이상)
7.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또는 수료자가 학습·봉사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8.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적용대상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
녀가 2명 이상인 가정)

14.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또는
수료자가 학습·봉사 목적으
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5.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
용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④ 시장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
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⑤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
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
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
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수강료 반환) 이

④-----

----- 감면-----.

⑤ -----

----- 감면-----.

제12조(사용료·수강료 반환) --

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 4. (생략)

-----.

-----.

1. 천재지변, 그 밖에 -----

2. ~ 4. (현행과 같음)

(현행+개정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문화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69에 둔다.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여성가족과장이 센터장이 된다.
② 센터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업무)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
2. 전문 기능교육 및 생활문화 교양교육
3.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카타그~~ 밖의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

제5조(차량운행) ① 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문화대학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 교육 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1. 음주와 소음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를 위협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

② 셔틀버스는 여성문화대학 및 직업훈련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구체적인 운행 노선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①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아수탁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커타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센터의 운영목적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센터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
4. 부당하게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
5.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1조(사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사용과 교육수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는 허가 시, 수강료는 수강등록 신청과 동시에 이를 각각 징수하며, 이 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적용대상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14.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또는 수료자가 학습·봉사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5.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④ 시장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경감~~감면할 수 있다.

⑤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경감~~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분의 수강료를 반환

제13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자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이하 교육수강생을 포함한다)는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시설사용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강사초빙)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사용료 등의 기준액

1. 시설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기준	평일요금	비고
대강당	공연, 발표, 교육 등 각종 행사	1회 2시간	50,000원	·토, 일, 공휴일, 야간은 평일요금의 20% 가산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 요금의 20%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회의실 강의실	회의, 교육 등	1회 2시간	20,000원	

2. 냉·난방 사용료

구분	기준	요금	비고
대강당	1회 2시간	30,000원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 요금의 20%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회의실 강의실	1회 2시간	10,000원	

3. 부속설비 및 비품 사용료

구분	기준	요금	비고	
음향기기	1회 2시간	12,000원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 요금의 20%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피아노	1회 2시간	12,000원		
조명	일반	1회 2시간		10,000원
	종합	1회 2시간		15,000원
기타비품	1회 2시간	10,000원		

4. 교육 수강료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기술·기능교육과정	1인 1개월	10,000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주6시간 이상 과목은 15,000원
생활문화교육과정	1인 1개월	10,000원	
교양(특별)교육과정	1인 1개월	10,000원	

5. 보육료 및 유아수탁료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유아수탁료 (수강생자녀)	1아동 1월	면제	·수강시간내